

특허청예규 제141호

디자인심사기준 일부개정령안

2025. 6.

특 허 청
디자인심사정책과

1. 개정이유

전체-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을 완화하고, 차량의 내부디자인의 조합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·외부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

-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면 양 디자인 간 선출원주의(법제46조)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
-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(법제35조)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

나.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

- 자동차 등 내부 공간에서 대시보드, 계기판, 운전대, 조작부, 콘솔 박스, 의자 등으로 구성된 내부디자인의 조합은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아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

다.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

- 재질,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도, 심사관이 도면을 보고 출원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

라.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관한 심사기준 마련

-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요건, 소급효 인정여부 등 명확한 기준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합의부서 : 없음

라. 기타 : 1) 일부개정안 전문 별첨

2) 의견문의('25.4.29.~'25.5.13.)결과, 특이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'25.5.23.~'25.5.27.)결과, 특이사항 없음

4) 규제심사('25.5.23.~'25.6.2.)결과 특이사항 없음